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7호서식] <개정 2026. 6. 11.>

정부24(www.gov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안전성향상계획 심사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
※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이용됩니다.

신 청 인	상호	생년월일
	대표자 성명	
	사무소 소재지 (전화번호:)	
	전자우편주소(e-mail)	
	사업자등록번호	

세부내용	사업소 소재지	
	사업의 종류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향상계획의 심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안전성향상계획서 3부 2. 안전성평가자료 3부	수수료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액

처리절차

신 청	→	접 수	→	검 토	→	의견서작성	→	기안·결재	→	의견서 발급
신청인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한국가스안전공사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